2025년 제3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2025년 제3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0월 20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급,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채용직류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해양수산B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	1명	정년적용	**실습선** 또는 해기교육지원행정부서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해양수산B	해양수산서기보	○ **실습선 승무원(갑판부원)** 및 해기교육지원 행정업무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11.20.) 기준]

지원코드/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요건
해양수산B / 해양수산서기보(선박항해)	○ **4급 항해사(상선)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5.10.31.) 기준]

<table>
<tr><th>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th><th>우대요건</th></tr>
<tr><td>해양수산B/
해양수산
서기보
(선박항해)</td><td>
○ 상위 자격증 소지자 : <u>3급 항해사(상선)</u>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등급별 차등배점
○ 관련분야 경력 ※ 최대 6년(72개월)까지 인정, 분기별 차등 배점
- <u>4급 항해사(상선)</u> 자격증 취득 이후 <u>총톤수 6,000톤 이상</u> 상선 승선경력
○ 공인영어시험 성적 우수자
- <u>'23. 11. 1.이후</u> 실시된 어학시험 중 원서접수 마감일('25. 10. 31.)까지 발표된 성적으로 인사혁신처 <u>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 "어학성적 사전 등록"에 유효하게 등록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u>
※ 다만, 통합채용포털에 어학성적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 중 서류전형일('25.11.10.) 기준 2년 이내 또는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성적만 인정(증명서 제출 필요)
※ 응시자용 통합채용포털 어학성적 사전 등록 절차 안내 관련 [별첨] 참조
※ 어학성적 진위 여부는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확인·검증 예정이나,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어학성적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개별검증 시함*)에는 지원자에게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지원자가 어학성적을 등록했으나 해당 검정기관을 통해 어학성적의 유효성 확인이 안 된 경우)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 인정
- 시험종류별·등급별 차등 배점(중복보유 시 유리한 1개 점수만 인정)
[어학성적등급표]
<table>
<tr><th rowspan="2">등급</th><th colspan="2">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th><th rowspan="2">G-TELP
LEVEL 2</th><th rowspan="2">FLEX</th></tr>
<tr><th>PBT</th><th>IBT</th></tr>
<tr><td>A</td><td>567점 이상</td><td>86점 이상</td><td>790점 이상</td><td>385점 이상</td><td>77점 이상</td><td>700점 이상</td></tr>
<tr><td>B</td><td>530점 이상</td><td>71점 이상</td><td>700점 이상</td><td>340점 이상</td><td>65점 이상</td><td>625점 이상</td></tr>
</table>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①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②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③ 산업기사 외(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컴퓨터활용능력1급),
④ 기능사 외(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2.1.1.이후 워드프로세서 2.3급 폐지 → 단일등급(구1급) 유지)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1급(2011.12.31.이전 취득)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2012.1.1이후 취득)에 한정함
※ 등급에 따라 차등 우대하되, 복수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
※ 등급구분: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외 > 기능사 외
</td></tr>
</table>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유 의 사 항

1.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우대요건 판단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판단기준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연월일), 근무시간(주40시간 등),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명시, 발급기관 직인 확인
-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주20시간 등)을 명기하여 제출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은 경력(재직) 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필수 제출

3.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4.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5 시험 방법

가. 1차(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2차(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평가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합격자 결정 방법: 4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하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동일 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평정순위 결정)**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순, 상의 개수가 같으면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5. 10. 20.(월)~ '25. 10. 31.(금)	'25. 10. 27.(월)~ '25. 10. 31.(금)	'25. 11. 12.(수) 예정	'25. 11. 20(목) 예정	'25. 12. 3.(수)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 합격자 명단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5. 10. 27.(월) ~ 10. 31.(금)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등기우편 접수 주소]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 공무원채용 담당

우편 접수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을 통해 공고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 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자격증(응시자격) 사본 1부	
	승무경력증명서, 해기면허사항 각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우대요건) 사본 1부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1부	통합채용포털에 어학성적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즉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제출
	채용서류반환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응시요건 확인, 각 전형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활용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2025. 12월 중 예정,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9 안내 및 참고사항

- 우대요건 중 “어학성적”의 경우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어학성적 사전 등록)에 유효하게 등록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포털에 성적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포털에서 즉시 성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어학성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051-410-4034)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 1 “공무원 채용시험 봄” 포스터

참고 2 임신 · 출산 및 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소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인사혁신처

1. 임신·출산 환경 지원 ❶

[휴 직]

질병휴직

✓ 임신중독증 등 임신 관련 질환 및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중 임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복직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필요 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여성공무원이 임신 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된 경우,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출근 의무가 없는 육아휴직 중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출산 시, 인사부서에 복직신청을 하여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 가]

(임신 전) 난임치료시술휴가

✓ 여성공무원은 인공수정 시술 시 총 2일, 체외수정 시술 시 총 3~4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남성공무원은 정자 채취일 당일 하루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시술별 특별휴가 일수>

대상	시술 종류	휴가일수
여성	인공수정 시술	2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	3일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	4일
남성	정자 채취	1일

(임신 후) 임신검진휴가

✓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임신·출산 환경 지원 ❷

[휴 가]

(임신 후)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특별한 제한요건이 있나요?

A.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출근을 전제로 하는 또 다른 특별휴가인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전·후) 출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다태아의 경우 120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다태아 임신 시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기간 배치는 의료기관 진단서상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 후)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 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5일로 확대하고, 120일 이내 범위에서 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23년 하반기 시행 예정)

[인사관리]

임신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허용

✓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 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허용됩니다.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기간 출장 제한

✓ 기관장은 임신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신 공무원이 신청 시, 장거리·장기간 출장이 가능합니다.

임신·출산 공무원 야간 및 휴일 근무명령 금지

✓ 기관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야간(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휴일(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해당 공무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 근무명령이 가능합니다.

2. 임신·출산 물적 지원

[맞춤형 복지]

난임 시술비 지원

✓ 난임 시술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복지점수 500점(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모자보건법」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해 1회 지원합니다.

태아·산모 검진비 지원

✓ 임신·출산 시 검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점수 총 200점(2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 출산 축하금 지급

✓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2,000점(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3,000점(300만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합니다.

⇨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 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지원 사업]

공무원 연금대출

✓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이거나, 신혼부부 공무원 등은 사회정책적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대출에는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3종이 있으며, 사회정책적대출은 다른 대출 대비 1%p 낮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Q. 사회정책대출을 받기 위한 신혼부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 신청 시, 결혼 전 6개월 이내 또는 결혼 후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결혼 전 신청 시에는 예식장 계약서면, 결혼 후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에게는 가점이 부여되며, 입주 중에 임신·출산할 경우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임대주택 신혼부부 가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결혼 전 6개월 이내 또는 결혼 후 7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때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빙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임대차계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하면 됩니다.

출산준비용품 지원사업

✓ 임신·출산 공무원에게 1자녀당 5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전용 온라인몰에서 원하는 용품을 선택·구매 가능합니다.

3. 육아 환경 지원

[휴 직]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사용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A. 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8세 이하(만9세가 되기 하루전까지) 또는 국내학교 학제 기준 초등학교 2학년 이하(3학년이 시작되기 전날까지)이어야 합니다. 연령과 학년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사용 가능하며, 기간 초과 여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육아휴직 사용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가족돌봄휴직

✓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직기간은 1년 이내 이며,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 가]

육아시간

✓ 만 5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육아시간 24개월 산정방식은 ①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월단위로 자감(최초사용한 기산일부터 다음달 기산일의 전일까지를 1개월로 봄)하고, ②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일을 합하여 1개월로 자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 어린이집 휴업,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육아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허용

✓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를 위해 필요 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허용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 전일제 공무원은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근무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전일제 공무원으로 회복됩니다.

4. 육아 물적 지원

[각종 수당]

가족수당

✓ 자녀 양육 시, 첫째는 3만원, 둘째는 7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11만원의 가족수당이 매월 지급됩니다.

⇨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

✓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당 1년입니다.

Q. 부부공무원이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부부공무원 모두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부부 중 1인에게는 육아휴직 첫 3개월까지는 월봉급액 100%(250만원 상한)를 지급합니다.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 재외근무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됩니다.

[맞춤형 복지]

가족점수 부여

✓ 자녀 양육 시, 첫째 50점(5만원), 둘째 100점(10만원), 셋째 이후 자녀 200점(20만원)의 맞춤형 복지점수가 매년 부여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지원 사업]

공무원 연금대출

✓ 미취학자녀 육아, 3자녀 이상 양육,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등은 사회정책적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취학자녀 및 3자녀 이상 양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23년 기준으로, 미취학자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의미하고, 3자녀 이상 양육은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2명 이상 혹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시, 미성년 자녀 양육 가정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5.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

- 이용대상 : 만 0세에서 만 5세 취학 전의 각 정부청사 입주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자녀
- 이용시간 : 평일 07:30 ~ 19:30, 토요일 07:30 ~ 15:30

청사	어린이집	위치 등
세종	꿈샘	세종시 밀마루길 6(8동 우정사업본부 근처) (044) 262-1676 http://sejongdreamkids.com
	라온	세종시 갈매로 381(정부세종청사 문화관 맞은편) (044) 866-2017 https://raonkids.kidsnote.ac
	빛듬	세종시 도움5로 19, 8동(우정사업본부) 1~2층 (044) 863-1542 bitdue1.co.kr
	솔비타	세종시 도움8로 11-20 (044) 864-8123 http://www.solvita-child.co.kr
	아이세상	세종시 국세청로 8-14(국세청 인근) (044) 417-1501~2 http://www.isesangkid.com
	아이온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1(산업부) 1층 (044) 715-7007 http://aion.or.kr
	예그리나	세종시 갈매로 477, 4동(과기정통부) 1층 (044) 200-1571(044) 868-5040) http://www.sejongyegrina.co.kr
	윤고운	세종시 갈매로 408, 14동(문체부) 1~2층 (044) 998-3131 http://www.allgoun.co.kr
	윤빛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2(산업부) 1~2층 (044) 715-7005 http://www.yunbit.co.kr
	이든샘	세종시 다솜2로 94, 5동(농식품부) 1~2층 (044) 262-1676 http://cafe.daum.net/edensam
	차오름	세종시 다솜3로 15(제15주차장내, 문체부 인근) (044) 862-1934 http://cor-child.co.kr
서울	푸르미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02) 737-7327 http://www.purumicc.co.kr
	한빛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39(창성동) (02) 735-8817, 6400 http://hanbit.kidsnote.ac
과천	과천청사	경기도 과천시 홍촌길로 38(중앙동) (02) 504-3004~5 http://www.gckids.co.kr
	청초롬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1-2) (02) 3679-3774~5 http://www.puruni.com/crr
대전	다솜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북문 (042) 719-8082 http://www.dasomkids.co.kr
	새롬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북문 (042) 481-6422 http://www.saeromkids.com
	아람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북문 (042) 481-6441 http://www.tjkid.co.kr
대구	행복한	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 업무A동 B1층 (053) 635-7911~2 http://www.happynursery.co.kr
인천	초롱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001, 1층 (032) 588-4536
광주	꽃초롱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062) 975-5700 http://www.crkids.kr
경남	예다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1층 (055) 981-6321 http://www.yedaumkids.com
제주	청사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064) 727-5570 http://cafe.daum.net/jejuchungsarang
고양	푸르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1층 (031) 966-3396 http://purumigy.co.kr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 통합 사이트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순서 관리 등 종합 정보 제공

정부세종청사 직장 어린이집 사이트

www.childcare.go.kr

정부대전청사 직장 어린이집 사이트

central.childcare.go.kr

인사혁신처

* 관련 정보는 인사혁신처(https://www.mpm.go.kr) 홈페이지(새소식-간행물-"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해양수산B	해양수산서기(선박항해)	해양수산서기보	1명	**실습선(갑판부원)** 또는 해기교육지원 행정부서

주요 업무	○ 실습선 항해 및 정박당직 업무 ○ 승선실습교육 지원 업무 ○ 항해기기 및 선박무선국 운용관리 업무 ○ 실습선 출입항 수속 및 일반서무 관련 업무 등 ○ 해기교육 지원 업무 및 행정업무 등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 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항해통신장비관리 능력, 문제해결력
필요 지식	○ 항해 및 통신장비에 관한 지식 ○ SOLAS, STCW, MARPOL 등 국제협약 ○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법 ○ 해사실무영어의 이해 ○ 전파법규 및 선박통신 관련 지식
응시자격요건	○ **4급 항해사(상선)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상위자격증 소지자** : **3급 항해사(상선)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등급별 차등배점 ○ **관련분야 경력** - **4급 항해사(상선) 자격증 취득 이후 총톤수 6,000톤 이상 상선 승선경력** ※ **최대 6년(72개월)까지 인정**, 분기별 차등 배점 ○ **공인영어시험 성적 우수자** - **'23. 11. 1.** 이후 실시된 어학시험 중 **원서접수 마감일('25.10.31.)**까지 발표된 성적으로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 "어학성적 사전 등록"에 유효하게 등록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다만, 통합채용포털에 어학성적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 중 서류전형일('25.11.10.) 기준 2년 이내 또는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성적에 한하여 인정(증명서 제출 필요) ※ 어학성적 진위 여부는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확인·검증 예정이나, 통합 채용포털을 통해 어학성적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개별검증 시험*)에는 지원자에게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지원자가 어학성적을 등록했으나 해당 검정기관을 통해 어학성적의 유효성 확인이 안 된 경우)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 인정 - 시험종류별 · 등급별 차등 배점(중복보유 시 유리한 1개 점수만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①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②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③ **산업기사 외**(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컴퓨터활용능력1급), ④ **기능사 외**(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2.1.1.이후 워드프로세서 2 · 3급 폐지 → 단일등급(구1급) 유지)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1급(2011.12.31.이전 취득)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2012.1.1이후 취득)에 한정함 ※ 등급에 따라 차등 우대하되, 복수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 ※ 등급구분: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외 > 기능사 외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필수서류] 1. 응시원서(응시수수료 포함) 1부	**o 별지서식 제1호 작성** **o 응시수수료** - 9급: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첨부 -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필수서류] 2. 이력서 1부	**o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필수서류] 3. 자기소개서 1부	**o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A4 2매 이내로 작성
[필수서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o 별지서식 제4호 작성** - A4 2매 이내로 작성
[필수(응시요건)/해당자(우대요건)] 5. 자격증(응시, 우대요건) 및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o **(응시,우대/자격증)** 응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o **(우대/어학성적)** 통합채용포털에 어학성적을 사전 등록한 경우 증명서 사본 제출 불필요하며, **통합채용포털에 어학성적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즉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증명서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응시요건)/해당자(우대요건)] 6. 승무경력증명서 및 해기면허사항 1부	o 제출된 승무경력증명서로 관련 응시자격, 경력사항 등 검증 * **해군** 근무 중 경력은 **승함경력증명서**로 대체 o 각 지방해양수산청,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o 해기사 자격은 해기사면허증으로 하되, 선박직원법 등에 따라 면허 재발급, 상위면허증 발급을 위해 하위면허증을 발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등에는 승무경력증명서 및 해기면허사항으로 확인함 o 해군 출신으로 상위자격증 발급 등으로 하위자격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각 해양수산청에서 최초 응시자격증 발급일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승함경력증명서 상의 최초경력 확인 가능
[필수서류] 7. 최종학력증명서 사본(학위증) 1부	o 각 전형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활용 < 제출예시 > 예1) 학사 졸업자는 학사 졸업증명서만 제출 예2) 학사 졸업 후 석사 과정 진행 중인 경우, 학사 졸업증명서와 석사 재학증명서 모두 제출 예3) 석사 졸업자는 학사, 석사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구 분	내 용
[필수서류]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o 별지서식 제5호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필수서류] **9.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o 별지서식 제6호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필수서류] **10.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별지서식 제7호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필수서류] **11. 주민등록초본**	o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하고 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o 개명 이력이 있는 경우 전/후 성명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o 과거주소변동 사항 불필요, 주민등록 뒷자리 표시
12. 채용서류반환 신청서 (별지서식 제8호)	o 희망자에 한함

<제출서류 표지용>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응시직급	제출자
	(서명)

▣ 작성목록(아래 순서대로 편철)

구분			제출여부 확인
1. 응시원서(응시수수료 포함)	필수	별지서식 제1호	□ 제출 □ 미제출
2. 이력서	필수	별지서식 제2호	□ 제출 □ 미제출
3. 자기소개서	필수	별지서식 제3호	□ 제출 □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별지서식 제4호	□ 제출 □ 미제출
5. 자격증(응시 및 우대) 사본	필수(응시) 해당자(우대)		□ 제출 □ 미제출
6.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해당자(우대) ※ **통합채용포털 어학성적 미등록/확인이 어려운 자**		□ 제출 □ 미제출
7. 승무경력증명서 및 해기면허사항	필수(응시) 해당자(우대)		□ 제출 □ 미제출
8.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필수		□ 제출 □ 미제출
9. 주민등록초본	필수		□ 제출 □ 미제출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별지서식 제5호	□ 제출 □ 미제출
11.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필수	별지서식 제6호	□ 제출 □ 미제출
1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필수	별지서식 제7호	□ 제출 □ 미제출
13. 채용서류반환 신청서	해당자	별지서식 제8호	□ 제출 □ 미제출

*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v" 표시
* **제출서류(1~13번 해당서류만 제출) 외 다른 서류는 제출 금지**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기준(분량,건수 등)에 위배(과소 또는 과다)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료 편철은 클립, 집게를 이용하며 스테플러는 사용금지, 번호 순서대로 편철**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본인은 2025년 제2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본인기재 (예: 해양수산서기보(선박항해))		
응시자격		본인기재 (예: 4급 항해사(상선) 자격증 이상 소지자)		
※응시번호		성 명	(한글) 본인기재 (한자) 본인기재	
생년월일	본인기재	복수국적 해당여부	본인기재	
주 소	(우) 본인기재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A4용지 형태 (전자수입인지)로 발급 시 응시원서 뒷장에 첨부
전자우편	본인기재			
전 화 (휴대전화)	본인기재			

응 시 표 (2025년 제2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본인기재	
응시자격		본인기재	
※응시번호	미기재	성 명	(한글) 본인기재 (한자) 본인기재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

(예) 해양수산서기(선박항해) / 해양수산8A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5급 이상은 10,000원, 6·7급/연구사/전문경력관은 7,000원,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미기재	응시 분야	(예: 해양수산B)	응시 자격 요건	(예: 4급 항해사(상선) 자격증 소지자)	성명	

2. 응시자격 ※ 해당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문구 삭제 후 제출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경력	ㅇㅇㅇㅇ (ㅇㅇ과)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과장 (4급)	공고문에 명시된 직무관련 분야와 동일함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작성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자격증			

3. 우대요건 ※ 해당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문구 삭제 후 제출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경력	ㅇㅇㅇㅇ (ㅇㅇ과)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과장 (4급)	공고문에 명시된 직무관련 분야와 동일함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작성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자격증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수	영문성명
어학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u>응시자격으로 제출한 경력 외</u> 별도 경력만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코드 작성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작성

- **4급 항해사(상선) 자격증 취득 이후 총톤수 6천 톤 이상 상선 승선경력**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자격증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어학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공인영어시험 성적만 작성

- 우대요건에 제시된 어학성적등급표를 참고하여 유효기간 내 해당하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있는 경우 작성
-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 "어학성적 사전 등록"에 유효하게 등록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통합채용포털에 어학성적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 중 서류전형일('25.11.10.) 기준 2년 이내 또는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성적에 한하여 인정(증명서 제출 필요)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 인정
- 시험종류별·등급별 차등 배점(중복보유시 유리한 1개 점수만 인정)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응시직급 및 분야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	성 명	

◎ 자기소개서

아래 내용은 삭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작성요령(삭제 후 내용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글씨체 : 휴먼명조, 글씨크기 13pt, 줄간격 160%, 글자색 : 검정색)

※ 서식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하되 성장과정, 지원동기, 가치관,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근무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근무할 때(X),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X), OO회사에서 근무할 때 (O)]

※ 성명, 서명 자필 작성

. . .

작 성 자: (서명)

<별지서식 제4호> (예시)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번호		응시직급 및 분야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	성 명	

◎ 직무수행계획서

아래 내용은 삭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작성요령(삭제 후 내용작성)

(시험공고문에 명시된 담당 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1. ① 본인이 해당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② 해당 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실적
   ③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근무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근무할 때(X),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X), OO회사에서 근무할 때 (O)]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글씨체 : 휴먼명조, 글씨크기 13pt, 줄간격 160%, 글자색 : 검정색)

3. 성명, 서명은 자필 작성

. . .

작 성 자: (서명)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자 제출자료 발급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자필서명 (서명 또는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 부산영도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서식 제8호>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자필서명 (서명 또는 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귀하

공지사항

1.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중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2.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